2장 I 국제실행위원회

1. 국제실행위원회 조직

○ 국제실행위원회

- 한　　국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북　　한 :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 중　　국 : 상해 중국위안부연구센터
- 대　　만 : 태북시 부녀구원사회복리사업기금회
- 필 리 핀 : 여성의 아시아인권센터
- 인도네시아 : 정의와 민주화를 위한 인도네시아여성협의회
- 네덜란드 : 네덜란드 여성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 동티모르 : 유엔독립정부
- 일　　본 : 바우넷 재팬

○ 공동대표단

- 한　국 : 윤정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일　본 : 마쯔이 야요리(바우넷 재팬 대표)
- 필리핀 : 인다이 사호르(여성의 아시아인권센터 대표)

○ 판사단

- 가브리엘 커크 맥도널드(Gabrielle Kirk McDonald, 전 유고전범 재판장, 미국)
- P.N. 바그와티(P. N. Bhagwati, UN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영국)
- 윌리 무퉁가(Willy Mutunga, 케냐 인권위원회 위원장, 케냐)
- 크리스틴 친킨(Christin Chinkin, 런던대학 법과대학 교수, 영국)

○ 법률고문단

- 론다 코플란(Rhonda Copellon, 뉴욕대 법과대학 교수, 미국)
- 테오 반 보벤(Theo Van Boven, 네덜란드 대학 법학과 교수, 네덜란드)
- 켈리 다운 아스킨(Kelly Dawn Askin, 워싱턴 대학 법학과 교수, 미국)
- 베리 무룽기(Betty Murungi, FIDA-케냐)

○ 국제검사단

- 패트리샤 셀러즈(Patricia Viseur-Sellers, 전 유고전범재판소 검사, 미국)
- 우스티나 돌고폴(Ustinia Dolgopol, 플린터 대학 법학과교수, 오스트레일리아)

○ 각국 검사단

한국/북한

- 김명기(한국, 명지대 법학과 명예교수)
- 조시현(한국,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김창록(한국, 부산대 법학과 교수)
- 장완익(한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박원순(한국, 참여연대, 변호사)
- 강정숙(한국, 한국정신대연구소)
- 하종문(한국, 한신대 국제학부 교수)
- 양현아(한국,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 황호남(북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위원회 서기장)
- 정남영(북한, 북한 사회과학원 교수)

중국

- Mr. Zhou Hong-jun(법학자)
- Mr. Su Zhi Liang(상하이 대학 역사학과 교수)
- Li Xiushi
- Gong Bia Hua
- Guan Jiangiang
- Zhu Cheng Shan
- Chen Li Fei

대만

- Mr. Liao Ying-Chin(변호사)
- Ms. Lu Chia Hsiang(태북시 부녀구원사회복리사업기금회)
- Mr. Chuang Kuo-Ming(변호사)

필리핀

- Dr. Merlin Magallona(필리핀 대학 법학과 교수)
- Atty. Sedfrey Candelaria(Ateneo 대학 법학과 교수)
- Dr. Purification Quisumbing(필리핀 고등재판소)
- Prof. Ricardo Jose(필리핀 대학 역사학과 교수)
- Atty. Evalyn Ursua(필리핀 대학 법학과 교수)
- Ms. Aurora Javate de Dios(미리암 대학)

인도네시아

- Nursyahbhani Katjasungkana(변호사)
- Antarinr Ama(변호사)
- Paulus R. Mahulette(변호사)

네덜란드

· Atty. Henry Grant(ICTY 검사)

동티모르

· Carmeliata Caetano Moniz(UNTAET)

· Maria Natercia Gusmao(UNTAET)

말레이시아

· Rosalind Saw(변호사)

일본

· Atty. Yuichi Yokota(변호사)

· Atty. Yasushi Higashizawa(변호사)

· Atty. Kazuko Kawaguchi(변호사)

· Prof. Kobi Abe(학자)

· Prof. Shin Hae Bong(학자)

○ 아미쿠스 쿠리에(Amicus Curae)

· Tusguo Imamura(변호사, 일본)

○ 전문가증인단

· Frits Kalshoven(국가책임, 라이덴 대학 교수)

· Theo Van Boven(배상, 메트리히트 대학 교수)

· Gay McDougall(인종차별 및 성문제, 전 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 Hayasi Hirohumi(일본의 황국군대, 칸트 가쿠인 대학 교수)

· Yoshimi Yoshiaki(위안소제도, 주오 대학 교수)

· Lepa Mladjenovic(트라우마, 성폭력 여성센터)

· Yamada Akira(히로히토 전 일본국왕, 메이지대 교수)

○ 공동사무국

· 한 국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일 본 : 바우넷 재팬

· 필리핀 : 여성의 아시아인권센터

2. 국제실행위원회 회의

○ 1차 창립 서울회의

- 일시 : 1999. 2. 18~19
- 장소 : 정대협 교육관
- 참가 :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 논의 :

1. 2000년법정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함.
   배심원 10명, 재판관 5명, 검사단 3명(검사장 1명-여성, 검사 2명-남성)
   변호사단 : 미정(한국과 일본의 입장의 차이)
2. 2000년법정 기간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하기로 결정함.
   12. 4~5 / 참가자 도착
   12. 6~7 / 국제회의(무력갈등 하 성노예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전략회의 ; 보스니아, 르완다 등)
   12. 8~10 / 국제법정(재판관 발표, 배심원 발표)
3. 국제실행위원회를 조직함.
   (1) 영어명은 Women's Tribunal International Organizing Committee로 하고, WTIOC를 약어로 사용
   (2) 조직과 공동대표를 다음과 같이 구성
   Japan Organizing Committee : Matsui Yayori(VAWW-Net Japan)
   Organizations of Victimized : Yun, Chung-Ok(Korean Council)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 Indai Sajor(VAWW-Net International)
4. 향후 2년간의 일정을 대략적으로 결정함.

- 1999년

2월 2000년법정 국제실행위원회 발족
3월 국제자문단에게 서울회의 결과 발송
4월 홍보물 제작
5월 헤이그 인권평화회의에 참석(윤정옥, 마쯔이 야요리, 조시현, 나카하라 미찌코, 김윤옥, 인다이 사호르), 배심원 명단 작성
6월 게이 맥두걸 초청 서울 국제심포지엄, 법률가모임(대만, 일본, 한국, 필리핀 법률가 그룹 ; 2000년 법정에 변호사를 둘 것인가를 결정)
7월 재판관과 배심원, 검사단 초청장 발송
9월 제2차 2000년법정 기본안 작성
12월 2000년법정을 위한 도쿄 국제회의(9일/ 회의, 10~11일/각 국 참가자, 국제자문단 회의, 12일/공개심포지엄), 진상규명작업 1차 완료, 각 국의 진상규명활동 논의

- 2000년

1월 모금활동 시작
2월 재판관, 배심원에게 추가작업
3월 한국 진상규명작업 완료, 전문가 그룹에게 참가요청서
6월 2000년법정을 위한 최종회의(마닐라, 4째 주)
8월 진상규명작업 완료, 영어로 번역
9월 재판관, 배심원에게 문서 발송
12월 2000년법정

○ 2차 도쿄회의

· 일시 : 1999. 10. 1~2
· 장소 : 일본 동경 교풍회 회의실
· 참석 :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 논의 :

1. 법정에 관한 토론
(1) 참가자수 예측
한국 100~150명, 북한 5명, 중국 10명, 대만 15명, 필리핀 20명, 인도네시아 10명, 말레이시아 5명, 네덜란드 10명을 포함하여 대략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기로 함.
(2) 법정 공용어를 영어, 한국어, 일본어로 하고 다른 언어가 필요한 경우 "귓속말 통역"(Whisper Translation)하기로 함.
(3) 국제자문위원회(IAC)의 자문을 받은 인다이가 마련한 판사단, 검사단 명단에 대한 구두설명을 들음.
1) 판사단에 Françoise Hampson(유엔 인권소위), Belo 주교, Danielle Mitterrand 이 거론되고 한국은 한승헌 전 감사원장을 추천함.
2) 검사단에 한 명의 검사장(Chief Prosecutor)과 각 국에서 뽑은 7명의 검사를 두기로 함.
(4) 법정의 전개형식에 대해 한국 측이 제시한 형식에 대해 대체적으로 호응함.
2. 조직개편
한국 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문제제기 끝에 한국 측 안을 그대로 수용
3. 국제회의 개최
오늘날의 무력충돌 중의 여성폭력 문제를 주제로 법정 폐막 후 1일 국제회의 개최하기로 함.
4. 기금마련
국제실행위원회에 기금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한국 10만불, 일본 20만불, 필리핀이 나머지를 마련하기로 함.
5. 행사일정표 확정(1999~2000)

6. 홍보

법정 브로셔를 만들기로 하고, 공통 문구를 마련하기로 함.

7. 헌장/규약

국제자문위원회의 바히다가 작성한 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일본 측 안과 한국 측 안을 놓고 논의, '헌장'으로 명칭을 정하고 전문과 조문화하는 형식에 합의함.

○ 3차 상해회의

- 일시 : 2000. 3. 30~4. 2
- 장소 : 중국 상해 상해사범대학
- 참석 : 한국, 북한, 대만, 중국, 일본, 필리핀
- 논의 :

1. 국제공청회

(1) Contact Person은 바히다 나이나르(Women's Caucus)에 맡기기로 하고, 전체 구성은 1부는 피해자들의 증언, 2부는 Empowering Women으로 하기로 함.

(2) 일본군 성노예제와 최근의 무력갈등 아래의 성폭력을 밀접히 연결하여 진행하기로 함.

2. 2000년법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

(1) 2000년법정 로고는 필리핀에서 준비한 것을 사용하기로 하고, 2000년법정 활동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함.

(2) 각 국의 지원그룹(개인과 단체 등)의 메시지를 받아 책으로 발간하기로 함.

3. 헌장 확정

상해에서 열린 헌장위원회가 만든 헌장을 확정하고, 인다이가 헌장을 판사단에게 검토하도록 함.

4. 검사단 및 판사단 수락상황 점검

현재 가브리엘 맥도널드와 피에르 사네가 판사직 수락을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은 박원순 변호사 외, 일본은 히가시자와 야스시 변호사 등이 각 국의 검사로 확정됨.

5. 국제언론 홍보전략

국제홍보를 전담할 사람을 찾고 있으며, 9월 대만회의까지 확정하기로 함.

6. 향후 일정 및 업무

7월 마닐라 IOC 회의와 9월 타이페이 IOC회의 등의 일정을 확정

○ 4차 마닐라회의

- 일시 : 2000. 7. 28~31
- 장소 : 필리핀 퀘존시티 센추리 임페리얼 팰러시 수트
  (Century Imperial Palace Suites)
- 참석 : 한국, 북한,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제검사단(패트리샤 셀러즈,

우스티나 돌고폴), 법률자문단(론다 코페론)

· 논의 :

1. 개막식을 12월 7일 진행하기로 하고 각 나라가 참여하는 형태의 기본안을 결정함.
2. 2000년법정에 전문가 증인을 각 영역별(배상, 트라우마, 일본군대와 명령체계, 여성과 인종주의 관점)로 초청하기로 함.
3. 판사단은 가브리엘 맥도널드, 피에르 사네, 카르멘 알히바이 등을 확정하고 크리스틴 친킨 등을 추천함.
4. 각 진행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공식통역에 한, 영, 일어를 확정함.
5. 2000년법정 시 각 국의 기소 일정을 다음과 같이 확정함.
   * 첫째 날 : 남한, 북한, 대만
   * 둘째 날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 셋째 날 : 네덜란드, 일본
6. 2000년법정 참가자들을 위한 책 출판은 필리핀의 아센트(Ascent)가 진행하기로 했으나, 출판의 명의에 대한 이견때문에 출판하지 않는 것을 합의함.
7. 국제공청회는 원안 그대로 진행하기로 함.
8. 국제홍보팀을 각 나라별로 1명씩 구성하여 국제실행위원회 홍보팀을 운영하기로 함.
9. 세계 NGO와 개인들이 2000년법정에 많이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하고, 지지서명을 받을 때 이름, 소속, 지지내용, 후원의 종류 등을 명기하도록 함.
10. 재정마련을 위해 총 소요예산을 50만불로 산출하고 일본 20만불, 한국 10만불, 필리핀 10만불, 대만 5만불로 수입을 잡고 세부안은 대만회의에서 결정하고 재정팀을 구성하기로 함.
11. 기타역할로 미디어팀 코디네이터는 한국, 재정팀 코디네이터는 일본이 맡기로 함.

○ 5차 대만회의

· 일시 : 2000. 9. 14~18

· 장소 : 대만 타이페이 아카데미아 신시아(Academia Sincia)

· 참석 :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국제검사단 (패트리샤 셀러즈, 우스티나 돌고폴), 법률자문단(론다 코페론)

· 논의 :

1. 전문가 증인 7명을 선정하기로 함.
   (1) 트라우마 : 미정
   (2) 히로히토 : Herbert P. Bix 추천
   (3) 일본군대 체제 : 하야시 히로후미
   (4) 위안소 : 요시미 요시아키

(5) 배상 : 반 보벤
(6) 국가책임 : 프리츠 칼소벤(동경재판 전문가)
(7) 인종주의와 여성관점 : 게이 맥두걸

2. 2000년법정 최종일정을 확정함.

12. 4 / 각 국 검사단과 증인 도착
12. 5 / 각 국 법정 리허설(1), 판사단 동경 도착
12. 6 / 각 국 법정 리허설(2), 판사단 및 검사단별 회의
필리핀 위안부 일본 소송 대법원 판결 및 기자회견
12. 7 / 개막식
12. 8 / 본 법정(남북, 중국), 특별 프로그램 참가자 환영만찬
12. 9 / 본 법정(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특별프로그램 영화제
12.10 / 본 법정(동티모르, 네덜란드, 일본)특별프로그램 세계인권의 날 문화의 밤
12.11 / 국제 공청회, 특별 프로그램 피해자들(위안부와 현재의 성폭력)과의 만남
12.12 / 판결 및 폐막, 특별 프로그램 연대시위
12.13 / 전략회의(국제 NGOs, 일본군'위안부'관련단체와 현재 성폭력 지원단체들)

3. 역할을 다음과 같이 나누기로 함.

(1) 참가비의 등급을 두기로 함. 아시아 피해국 참가자들을 제외한 외국인은 250불, 일본인은 매일 3000엔을 받기로 함.
(2) 프로그램은 각 국의 언어로 번역한다.
(3) 각 국은 11월 29일(수) 12시 정각에 각 국의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연대수요시위를 갖고 캠페인을 진행
(4) 법정 서기국을 설치
- 역할은 법정기록을 작성하고 법정자료를 판사단에게 제출하는 일들을 맡는다.
- 각 국별로 1명의 책임자를 둔다.
(5) 미디어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코디네이터는 한국이 담당한다.
- 소규모 기획팀을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구성한다.
- 사진과 비디오는 바우넷 재팬에서 준비하되, 각 국에서도 준비한다.
(6) 자료정리를 위해 법원 속기사를 필리핀 팀에서 영어가능자로 데려와 법정기록을 담당하게 한다.
(7) 사무처는 일본이 주로 담당하고 각 나라별로 영어를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한다.
(8) 피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를 배치한다.
(9) 2000년법정 전체 무대감독을 필리핀 Bahn Servantes로 위촉한다.
(10) 보안은 경찰에 의뢰하며, 증인보호를 위해(Victims witness protection unit) 프
로그램을 실시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스크린 뒤에서 증언할 수 있는 체제

를 갖춘다.

(11) 전반적인 회계업무는 바우넷 재팬이 맡는다.

(12) 사무국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한다.

(13) VIP 전담팀을 구성한다.

(14) 2000년법정 특별프로그램은 매일 오후 6:30~8:30까지 이루어진다.

- 개막식은 한국, 환영만찬은 일본이 담당한다.
- 폐막식 이후 일본정부 등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시위를 한다.

○ 6차 도쿄회의

· 일시 : 2000. 11. 17~21

· 장소 : 일본 동경 바우넷 재팬 사무실

· 참석 : 한국, 일본, 필리핀

· 논의 :

1. 법정 진행형식은 기소장 낭독, 피해자 증언, 증거제시의 구성요건을 되도록 갖추기로 함.
2. 개막식은 통역자를 두기보다는 한국, 일본, 필리핀 3인이 공동사회를 보기로 하고, 2000년법정 로고의 깃발입장, 돌아가신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무 등의 순서를 넣기로 함.
3. 2000년법정을 위해 법정 서기국을 운영하기로 하고 판사단에게 제출할 서류 및 자료수발을 담당하기로 함.
4. IOC주최의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함 : 환영만찬(12.8), 비디오 페스티발(12.9) 아시아문화의 밤(12.10), 피해자들간의 만남(12.11), 데모(12.12)
5. 상세한 업무분장을 마련함.

(1) 프로그램 자료집

- 한글, 영어, 일어 : 각국 언어로 각기 제작
- 내용 : 인사말, 2000년법정의 의미와 경과, 본 법정 세부일정, 헌장, 각 국의 운동단체 소개, 연혁, 각국의 피해자 현황 등

(2) 전시 및 홍보부스

- 책임자 : 일본, 조력자 : 각 국 1명
- 각 국별로 전시물 내용 확인작업

(3) 의료 지원

- 구단회관 내 의사 1명, 간호원 2명 상주, 응급상황 시 지정병원
- 기본적으로 각 국이 피해자를 돌봄

(4) VIP 접대

- 내용 : 공항과 시내 공항터미널 등에서 안내, 호텔에서 기본적인 생활 안내 및 접대
- 구성 : 일본(책임자), 각 국 8명(각 국 1명, 영어 가능자)

(5) 미디어팀 운용
- 내용 : 국내외 신문 방송 담당, 피해자 인터뷰 연결
- 구성 : 2000년법정에 관한 인터뷰(윤정옥, 인다이, 마쯔이 야요리), 미디어를 위해 회관 2층 제공, 포토라인 설정, 기자증 발급, 기자실 마련, 각종 기기 마련
- 조직 : 다카하시(책임자), 신혜수, 필리핀
- 한국 미디어팀 : 이김정희(여성신문), 박민희(한겨레신문), 안해룡 외 4명(아시아프레스), 조현숙(인터넷대안TV), 오마이뉴스 2명(인터넷생중계)

(6) 보안
- 구단회관 외부에 경찰 배치, 내부에 사복경찰 5명 배치, 국회의원 4명 참석

(7) 인터넷 생중계
- 현지 생방송, 홈페이지 링크, 압축 보도
- 영어 생방송

6. 수정예산안을 40만불 규모로 확정 통과함.

○ 7차 서울회의

· 일시 : 2001. 2. 22~23
· 장소 : 정대협 교육관
· 참석 : 한국, 일본 필리핀, 중국
· 논의 :

1. 최종판결은 국제전범재판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5. 24~25 혹은 5. 22~23일에 개최하기로 함.
2. 인다이가 요청한 네덜란드 NOVIB지원금 액수에 따라 행사규모를 결정하기로 함.
3. 만약 NOVIB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뉴욕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진행하기로 함.

○ 8차 뉴욕회의

· 일시 : 2001. 9. 22~23
· 장소 : 미국 뉴욕 우먼스 코커스,
· 참석 : 한국, 필리핀, 일본(전화)
· 논의 :

1. 최종판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 필리핀이 최종업무 분담을 논의함
2. 아시아 피해국 참가자들을 위한 재정을 분담하기로 하고 한국은 북한 4명의 체제비를, 일본은 중국 4명의 체제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실행위원회가 노비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기로 함

3. 국제검사단 · 법률자문단 · 판사단 회의

○ 국제검사단 1차 상해회의

· 일시 : 2000. 3. 30~31
· 장소 : 중국 상해
· 참석 : 한국, 북한, 일본, 대만, 중국, 필리핀

1. 헌장위원회
· 일시 : 2000. 3. 30~31
· 장소 : 중국 상해
· 참석 : 한국, 북한, 일본, 대만, 중국, 필리핀
· 논의 :
(1) 2000년법정이 권위 있는 민간법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적 책임과 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함.
(2) 전 일본국왕의 책임은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 수렴하기로 함.
2. 기소장위원회
· 일시 : 2000. 3. 31
· 참석 : 한국, 북한, 일본, 필리핀
· 논의 :
(1) 각 나라가 준비하는 기소장은 전체 기소장의 요약본의 형태로 10페이지 내외로 정리하기로 함.
(2) 기소장의 중심적인 단어를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d Sexual Violence로 사용하기로 함.
(3) 각 국 검사단과 수석 검사단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함.
(4) 각 국 기소장을 영어로 완성하는 일정을 2000년 7월까지 하기로 함.
(5) 각 국별로 기소장 준비사항을 보고함.

○ 국제검사단 2차 마닐라회의

· 일시 : 2000. 7. 28(금)
· 장소 : 필리핀 퀘존시티
· 참석 : 국제검사단(우스티나 돌고폴, 패트리샤 셀러즈),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 논의 :
1. 피고의 수준을 상위로 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각 국의 기소장의 상황과 정황증거를 통해 판명하기로 함.
2. 죽은 자에 대한 처벌은 국제법의 현실 상 불가능하지만, 인권법정으로써의 2000

년법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로 함.

3. 현실적으로 전 일본국왕의 '위안부' 관련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증거는 찾기 힘드나 당시 최고통수권자이므로 전 일본국왕을 기소하기로 함.
4. 국제검사단이 각 국 검사단의 기소장을 모아서 하나의 기소장을 작성하는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법정 시나리오만을 개략적으로 구성하고 자세한 사항은 대만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Opening Remark / 판사 - 2000년법정의 역사 설명
   * 국제검사단의 발언 / 전체개요,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
   * 각 국 검사단 /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프리젠테이션, 기소와 법률적용
   * 국제검사단의 요약 / 전체상황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기소대상자를 발표
5. 일본에서 문제 제기한 변호인 선정요구에 대해, 처음 결정대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기로 하고, 기소장에 일본정부의 반론을 싣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6. 2000년법정 이전에 일본정부에게 소환장을 편지형식으로 발송하기로 하고, 대만회의에서 구체적인 형식을 만들어 검토하기로 함.
7. 헌장의 서문 등 일부분을 수정하고 13조는 삭제하기로 함.

○ 국제검사단 3차 대만회의

- 일시 : 2000. 9. 15~17
- 장소 : 대만 타이페이 아카데미아 신시아(Academia Sincia)
- 참석 :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국제검사단(패트리샤 셀러스, 우스티나 돌고폴), 법률자문단(론다 코플론)
- 논의 :

1. 각 국의 기소장 작성의 형식을 합의함.
   * 일련번호를 사용한 국제문서의 형식을 따르고 뉘른베르크 문건을 모델로 이용
   *. 아시아 공통의 역사적 배경을 각 국이 서술하고 각 국의 역사적 배경을 서술
   * 용어는 'Comfort Women', 'Sexual Slavery'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이용하고 'Occupy', 'Colony', 'Annex' 등 성격에 따라 구분.
   'Survivor', 'Victim'은 Survivor를 사용
2. 일본정부에게 보내는 소환장 혹은 편지는, 한달 전인 11월 12일 경 발송하는 것으로 하고, 판사단과 의논하기로 함.
3. 기소의 주체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람으로 하기로 함.
4. 피고인을 세우는 일은 주로 고위급을 세우기로 하고 반드시 특정이름을 거명하고 인적사항을 기록하기로 함.
5. 변호인을 선정하는 일은 일본측에 의해 다시 제기되어 각 국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제를 채택하기로 함.
6. 1차적으로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는데 초점을 두기로 하고, 대신 판결문에 연합

국의 책임을 언급하기로 하며, 남북공동기소장에 일본정부 책임을 언급하는 부분에 삽입함.

7. 기소장 작성 형식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함.

Background

Historical Background : country

Background : Facts

Accused

Hirohito

Prime minister

Governor general

etc.,

General Allegations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Common Legal Paragraph

Courts

CAH - Enslavement, Rape, Torture, Slave etc.

8. 법정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함.

개회(1시간)

- 국제검사단 2명(45분) : 법정 진행, 법정 목적, 법적용 문제 등
- 변호인 1명(15분) : 일본정부의 입장

일본의 증거(1시간) / 전문가증인 3명

-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 / Herbert P. Bix
- 일본군 체계 / Hayashi Hirofumi
- 일본군 위안소 / Yoshimi Yoshiaki

각 국 기소장 발표(각 국 당 90분)

12월 8일 1) 남북 공동 : 3시간
2) 중국

12월 9일 3) 대만
4) 필리핀
5) 인도네시아

12월 10일 6) 네덜란드
7) 동티모르
8) 일본

전문가 증인 2명(40분)

- 여성과 인종의 관점 / 게이 맥두걸

부

- 트라우마 / 미정

일본 가해자의 증언(30분)

- 가해자 2명

전문가 증인 2명(40분)

- 국가의 책임 / 칼쇼벤(Flitz Kalshovin)
- 배상 / 테오 벤 보벤(Theo Van Boven)

폐회(1시간)

- 국제검사단 1명 : 요약, 정리
- 일본변호인 : 항변 이유

○ 법률자문단 1차 워싱턴회의

· 일시 : 1999. 11. 10~12

· 장소 : 미국 워싱턴 힐튼호텔

· 참석 : 우스티나 돌고폴, 윤정옥, 마쯔이 야요리, 인다이 사호르, 쯔지이 미호, 살롯 번치, 플로렌스 버터구와

· 논의 :

1. 법정을 3일 동안 진행하기로 하고, 1일 총 7시간으로 하기로 함.
2. 기소 요지발표에 필요한 시간은 각 나라가 90분씩 하기로 함(검사진술 30분, 피해자 증언 30분(2명), 조사자 진술 30분).
3. 기소국을 7개국으로 하기로 함(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중국, 북한, 한국, 일본).
4. 검사장으로 지난 10월 국제실행위원회에서 추천했던 아스마(검사장, 파키스탄)와 레베카(검사장보, 캐나다) 2인으로 검사장단을 구성하기로 함.
5. 판사, 검사, 전문가 증인에게 정식초대장을 발송하되, 전자메일로 초대장을 먼저 보내기로 함.
6. 판사와 전문가 증인들에게 법정의 성격을 알리는 설명서를 미리 보내며, 2000년 법정이 끝난 후에 공청회가 계속됨을 알려 계속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참석할 수 있도록 함.
7. 2000년법정 판검사단(안) 및 전문가증인단(안) 명단을 발표함.

△ 검사단 구성

* 검사단 : 총 9명으로 2인1조 부장검사단을 구성
* 검사장단(안) : Ms. Asma Jahangir(파키스탄), Ms. 레베카(캐나다)
* 각 국 검사단 : 박원순(한국), 우스티나 돌고폴(호주), 머린 마갈로나(필리핀) 등

△ 판사단 구성

* 판사단 : 총 7명

· Ms. Danielle Mitterand
(전 미테랑 대통령 부인, 부장판사, Human Rights Summit 의장)

· Ms. Louise Joinat
(미국 국적 프랑스 판사, Impunity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 Ms. Gracia Machal
(모잠비크 어린이회 회장, 넬슨 만델라 부인)

· Ms. Isabel Allende
(칠레, 국회의원, 인권운동가, 전 칠레 대통령 아헨데의 딸, 독재자 피노체트에게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인권과 사회정의 회복을 위해 운동)

· Ms. Pierre Sane
(세네갈, 국제엠네스티 회장)

· Ms. Virtit Matterborn
(태국, 출라퐁콩대 교수, 어린이 매매춘과 학대받는 어린이 보호운동, 전 어린이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 Ms. Gabriela McDonald
(미국, 전 유고전범재판 재판장)

△ 전문가증인 구성

* 전문가증인단 : 총 4명

Ms. Rhadhika Coomaraswamy
(스리랑카, 여성에 대한 폭력 유엔특별보고관)

Ms. Patricia Viseur-Sellers
(아프리카계 미국인, 유고와 르완다 전범재판 시 폭력을 당한 여성을 위한 검사보)

Ms. Judith Herman
(미국 하버드의대, 트라우마 전공)

Ms. 아키라 후지와라
(藤原 아키라, 일본역사 및 일본제국군대사 전공)

△ 원고단 구성

* 원고단 : 총 14명으로 각 국별로 2명(한국, 북한, 대만,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 판사단 헤이그회의

· 일시 : 2000. 10. 26~27

· 장소 : 네덜란드 헤이그 노비브 빌딩
· 참석 : 공동대표(윤정옥, 마쯔이 야요리, 인다이 사호르), 판사단(가브리엘 맥도널드, 크리스틴 친킨, 카르멘 알히바이, 비티 문타본, 바그와티, 윌리 무퉁가), 검사단 및 전문가증인단(조시현, 양현아, 히가시자와, 패트리샤 셀러즈, 우스티 나 돌고폴, 론다 코플론, 프리치 칼소벤)
· 논의 :

1. 2000년법정의 본질과 성격을 성노예제에 대해 어떤 전범자도 처벌한 경우가 없는 극동전범재판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상징적인 법정이고 중요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는 정치적 행위라고 합의함.
2. 헌장을 최종개정함.
3. 각 국의 기소장에 개인 피고를 거론하는 것과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을 기소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함.
4. 개인피고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
5. 각 국의 최종기소장은 11월 6일 이전에 판사단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증거자료는 11월 10일에 제출되어야 함.
6. 평등성(Equality in Action)을 위해 주심 판사제(Presiding Gudge)를 두지 않기로 함.
7. 판사단의 제안으로 2000년법정 후 회의를 열기로 동의함.
8. 2000년 12월 동경에서 열리는 판결은 요약판결의 형태이며, 최종판결은 2001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맞춰 열기로 함.

1. 2000년 법정의 일정 · 내용

○ 2000년법정 일정

12/7 (목) 개막식
12/8 (금) 법정 첫째 날
10:00 - 10:30 판사단에 의한 개회
10:30 - 11:30 국제검사단의 기소요지 발표 : 페트리샤 셀러스, 티나 돌고폴
일본측 변론요지 : 이마무라 츠구오(Amigas Curie)
11:30 - 13:00 남북공동기소(1) : 기소장 낭독, 강제연행, 위안소의 범죄
13:00 - 14:30 점심식사
14:30 - 16:00 남북공동기소(2) : 패전 후, 현재까지의 고통, 개인과 국가책임 기소
16:00 - 16:40 전문가증언(1) 일본제국군대의 구조 / 히로후미 하야시
전문가증언(2) 전 일본국왕의 책임 / 야마다 아끼라
16:40 - 17:30 일본의 기소 : 전 일본국왕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증거제시
18:30 - 20:30 환영만찬(주관 : 일본 바우넷 재팬)

12/9 (토) 법정 둘째 날
10:00 - 11:30 중국 기소
11:30 - 13:00 필리핀 기소
13:00 - 14:30 점심식사
14:30 - 15:05 전문가증언(3) 일본군 위안소의 구조/ 요시미 요시아키
전문가증언(4) 트라우마/ 레파 모라제도벅
15:05 - 16:35 대만 기소
16:35 - 17:00 말레이시아 기소(비디오 상영)
18:30 - 20:30 비디오 페스티발 : 각 국 위안부 관련(주관 : 일본 바우넷 재팬)

12/10 (일) 법정 셋째 날
10:00 - 10:45 네덜란드 기소
10:45 - 12:45 인도네시아 기소
12:45 - 13:15 전문가증언(5) 전시 중 여성에 대한 성폭력 / 게이 맥두걸(비디오)
전문가증언(6) 국가의 책임/ 프리츠 칼쇼벤
13:15 - 14:45 점심식사
14:45 - 15:30 동티모르 기소(45분)
15:30 - 15:45 일본인 위안부(증거제시)
15:45 - 16:15 가해자의 증언(2명)

16:15 - 17:00 국제검사단의 최종기소
일본변호사의 발언 : 아이타이 구니오, 스즈끼 이소미
18:30 - 20:30 세계인권의 날 기념 문화의 밤 'SAY YES' Concert(주관: 한국정대협)

12/11 (월) 최근 무력갈등 아래의 성폭력에 관한 국제공청회
09:30 - 10:00 주최자의 개회사(바우넷, 어센트, Women's Caucus)
10:00 - 10:30 국제공청회 소개
10:30 - 12:45 증언(르완다,동티모르,과테말라 / 미국,오키나와,베트남,부룬디,코소보)
12:45 - 13:15 분석 및 논평
13:15 - 13:45 오전 공청회 총정리
13:45 - 14:45 점심식사
14:45 - 15:00 오후 공청회 소개
15:00 - 16:45 증언(방글라데시 치파스, 알제리아, 버마,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에라 레온)
16:45 - 17:15 오후 공청회의 분석 및 논평
17:15 - 17:45 여성에 관한 성폭력 유엔 특별보고관의 폐회선언 / 쿠마라스와미
17:45 - 18:00 폐회식 / 사회자와 피해자
18:30 - 20:3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와의 만남
(주관 : 일본 바우넷 재팬)

12/12 (화) 법정 넷째 날
10:00 - 13:00 판사단의 판결 및 논평
13:00 - 15:00 데모 / 피해자와 국회의원과의 만남 / 기자회견

2. 2000년법정 녹취록(요약)

□ 2000년법정 첫째 날(2000년 12월 8일)

● 개회 선언: 가브리엘 맥도널드(판사)

: "모두 일어서십시오!" 참석자 모두가 일어섰고 판사단이 입장했다.
가브리엘 맥도널드 의장은 "이 법정은 성노예 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일본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정부에 이 법정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라고 개회를 선언했다.

● 논고 : 패트리샤 셀러즈, 우스티나 돌고폴 (국제검사)

: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공동검사단은, 일본전쟁 중 생산된 모든 일본군'위안부'를 원고로, 피고로는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치로, 오카무라 야스지,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마츠야마 우조 등 히로히토 외 7인을 기소했다.

● 기소요지 : 패트리샤 셀러즈 (국제검사)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강간과 집단 강간죄에 기반하여 기소한다. 노예제는 누군가를 소유, 운송하거나 성적, 정신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1945년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해도 노예제는 여전히 범죄로 성립한다. 다양한 증거를 볼 때 아시아 지역 위안소는 일상화되어 있었고, 장군들의 역할 중 하나가 점령지인 한국, 대만 등지로부터 여성을 모아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들 여성들을 정신적 죽음으로 몰아갔고 결국 고립시켰다. 이러한 고문의 체계와 조직체계에 입각하여 성노예제를 행했던 당시 전 일본국왕 히로히토를 피고로 제시한다. 일본 헌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일본이 위안부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방관하고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헌장은 위법이다.

- '위안부' 관계 서류를 공개할 것
- 일본 정부는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 사후, 노후 배상 및 보상을 할 것 등을 요청한다. 또한 피해자와 충분한 합의없이 국민기금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는 적절치 못하다. 공식적 체계를 마련하고 적법한 배상을 하기를 요청한다. 법적 책임과 별도로 도덕적 책임을 묻는다.

질의: 맥도널드 (판사)

: "인도에 반한 죄가 당시의 법에 의해서도 불법인가, 도쿄재판에서 히로히토가 거명되지 않았었는데 다른 증거가 있는가?"

답변: 패트리샤 (검사)

: "모두 그렇다."

● **변론요지: 이마무라 츠구오 (변호인, 아미쿠스 쿠리에)**

: 1941년 12월 8일, 아시아지역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군의 점령 아래에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고통받았다. 특히, 여성들이 성노예가 되었다. 이것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었다. 이 법정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달라. 이마무라 변호사는 인권문제에 대해 네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1. 사기에 의해 희생자가 끌려감 : 기소당한 가해자들이 모두 사망했다. 그래도 죄목은 남아있다.
2. 사령관직에서 저지른 범죄 : 일본헌법을 통해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야 한다.
3. 국가 책임과 개인의 책임 : 개인에 대해 각각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법적으로 분석하고 확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전 일본국왕 기소에 대해 : 전 일본국왕은 이미 죽었고, 과거 일본법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존엄한 인물이다. 신중한 검토를 바란다.

일본 정부는「일본의 사법제도를 통해서 일본군의 유효시효가 말소되었으며, 국제법 위반과 배상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한일기본협정과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전쟁 중 피해자의 기소부분은 일본검찰청이 증거부족으로 기각했음을 밝혔다

● **남북한 공동기소(1)**

: 남한 검사단 박원순, 강정숙, 하종문, 장완익, 김창록, 양현아, 조시현과, 북한 검사단 홍선옥, 정남영, 황호남, 김은영의 인사로 시작되었다.

△ **기소장 낭독: 박원순 (한국 검사)**

: "전후 도쿄재판은 연합국의 이익을 위해서 열렸으며, 다수의 아시아 피해국에 대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2000년법정은 그동안 지연되었던 재판을 실현한 것이며 민중의 재판이다. 여성문제로만 여겨 이슈가 되지 못하고 그동안 침묵을 강요당했었으나 이것은 젠더 이슈이다. 당시 남과 북은 식민지였기에 조직적, 체계적으로 끌려갔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한다." 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회 역사적 배경, 강제연행 과정, 위안소의 범죄, 패전 후 일본군'위안부'의 유기나 살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개인의 책임이나 국가의 책임에 해당하는 법을 적용하여 차례로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 **사회역사적 배경: 홍선옥 (북한 검사)**

: 청진에 있던 군위안소 사진을 제시하며,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유괴와 납치 등으로 여성을 강제동원하였다. 여성들을 끌고 가 성폭행

하고 학살한 범죄는 조선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구 일본정부와 군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이다." 라고 강조했다.

△ 강제연행과 이송: 하종문 (한국 검사)

: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위안소가 출현되었고,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조직화되었다. 주로 사기, 납치, 인신매매를 통해 연행되었고, 경찰과 헌병이 주도했다.

○ 김복동 증언 (건강상의 이유로 비디오 증언)
관동,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위안소로 끌려 다님.

※ (증거자료) 일본 내무성 자료 : 1921년 12월 1일 자료
「중국 관동에 주둔하던 21군이 위안소 설치를 위해 일본군'위안부'를 모아달라.」고 작성된 공식문서이다.

○ 김군자 증언
"연행자에게 끌려 트럭을 타고 도착한 곳은 대만 훈춘이었다. 우메즈 요시지로가 사령관으로 있던 71사단으로 관동군 예하부대였다. 저항했다가 폭행당했으며 군인이 많은 날은 40명까지 받았다고 했다. 못견디어 죽는 일본군'위안부'가 늑대의 먹이가 되는 것도 보았다."고 했다.

하종문 검사는 일본군 문서에는 21세 이상 기존 매춘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12세~20세의 여성이 주로 잡혀갔다. 반세기에 걸친 어둠의 역사를 물러가게 해주시고 올바른 정의를 내려달라며 말을 마쳤다.

△ 강제연행: 황호남 (북한 검사)

: 전북 김제에서 1935년, 17세 가정부인으로 끌려갔던 피해자의 증언을 시작으로 최봉선, 정훈경, 배수환, 김득순 등의 증언을 통해 소녀에서 주부에 이르기까지 회유, 기만하여 끌어간 사실을 밝혔다.

○ 박영심 증언(건강 악화로 비디오 증언)
14살 때 양복점에서 식모살이를 했다. 15세 때인 1938년 3월 일본 순사가 돈벌이가 많이 되는 곳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 남포에서 평양으로 갔다가 난징 위안소로 갔다. 3년 정도 일본 이름으로 불리며 일본군'위안부' 생활을 했다. 이후 상하이로 갔다가 싱가포르를 거쳐 버마의 랑군위안소로 갔다. 폭격이 심해지자 일본군 56사단에서 성노예 뿐만 아니라 밥을 하는 등 부역까지 했다. 일본군이 아무 말 없이 떠나자 방공호에 숨었다가 중국군에 발견돼 쿤밍 포로수용소로 갔다. 1944년 9월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을 때 임신한 상태였으며, 어느 날 갑자기

하혈을 하였다. 아이는 뱃속에서 죽었다.

황호남 검사는 "이에 대한 사진자료가 당시 미군 정보지에 남아 있으며 조선인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병사들의 증언에 의하여 그려진 지도에 위안소가 그려져 있다. 마사노리라는 군인은 임신한 여성이 와까하루라고 증언하고 있다. 요타 스요시의 <라모>라는 책에는 와까하루는 22살로 박영심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박영심이 최전선 버마에 끌려가 일본군'위안부' 역할을 했음을 밝혀 56사단장 마쓰이 히데지가 유죄"임을 밝혔다.

황호남 검사가 점심 이후 속개된 법정에서 피해자의 오전 증언이 본인의 것인지 확인하고 시작하였다.

○ 하상숙 증언 : 30세가 넘은 듯한 군복차림의 남자가 끌고 갔다. 내 나이 17세였고, 경상도에서 온 아가씨들이 많았다. 군인들이 줄을 서서 위안소로 왔고, 하루에 30명 정도 받았다. 월경을 할 때는 솜으로 틀어막고 받으라고 했다.

○ 김영숙 증언 : 12세에 머슴살이를 갔다. 일본순사들이 와서 돈벌이 하러 가자고 해서 갔다. 마차를 타고 며칠을 갔는데 도착한 곳이 심양이었다. 그곳에 군 위안소가 단층집 칸칸이 있었다. 높은 담장에 철사망까지 쳐있었고 세파트도 있었다. 나카무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부를 칼로 찢기까지 했다.

△ 지속적 강간과 노예생활: 강정숙 (한국 검사)

: 강정숙 검사는 남한 문필기, 김복동 피해자를 증인으로, 지속적 강간과 노예생활을 입증했다.

○ 문필기 증언 : 14세 때 이웃집 아저씨와 경찰이 데려갔다. 만주로 갔다. 말 안 들으면 페치카에서 인두로 지졌다. 군인들만 왔고, 헌병들이 지키고 있어서 도망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 김복동 증언(비디오 증언) : 합판으로 만든 방들이 칸칸이 있었다. 방마다 이름이 붙어 있었다. 옆방의 숨소리까지 들렸다. 15세에 강제 연행되어 관동, 홍콩, 싱가포르 등지로 끌려 다녔다.

강정숙 검사는 "연행된 위안소에서 기다린 것은 강간이었다. 그들은 저항했으나 폭력 앞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아편중독과 고립으로 고통당했으며, 혹 도망치다 잡

하면 처형도 서슴치 않았다. 군인과 일본군 '위안부'의 통치규정도 있었다. 군표제도, 성병예방 등에 대한 기록도 있다. 강덕경 피해자는 뉴기니아 라바울 위안소의 생활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패전 직후 조선인 위안부에 자행된 반인류적 행위 : 양현아 (한국 검사)

: "종전과 함께 피해자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 많은 입증자료들이 필요하나 증거들이 은폐되고 파기되어 아쉽다. 생존자의 육성을 통해 대변하겠다."

○ 안법순 증언 : 17세에 싱가포르 위안소로 끌려갔다. 어느 날 일본군이 사라졌다. 버려진 채 먹을 것이 없어서 나뭇잎을 삶아 먹었다. 한국에 돌아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시모노세키에서 연합군의 폭격으로 배가 파손되어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양현아 검사는 현재, 중국 등 강제로 해외에 잔류하고 있는 피해자의 삶과 보상문제, 당시 어렵게 귀국한 여성들도 삶의 대책이 없었던 여러 과정을 되짚어 보았다.

- 비디오 증언

○ 최갑순 증언 : 만주에 혼자서 발로 걸어 귀국하는데 4년이 걸렸다.
○ 박영심 증언 :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연행되었을 때 임신 중 수술, 1967년 자궁 절제 수술을 함.
○ 김영숙 증언 : 골절되어 지금도 다리가 아프고 부인병과 방광창으로 고통 당하고 있다.
○ 유순옥 증언 : 작고함.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군도로 배를 갈랐다.
○ 정옥순 증언 : 도주하려다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고 상처가 수치스러워 목욕을 하지 못한다.

위 증언은 일본군'위안부' 시절의 구타와 학대로, 현재에도 무절제한 수술, 주사남용과 매독균에 의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깊은 마음의 상흔이 더욱 심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든 사실과 증거에 대해 법률적 적용과 평가에 대한 논고가 시작되었다.

△ 피고인의 개인책임: 조시현 검사 (한국 검사)

: "피고인들은 지위와 자리에 입각하여 부하들의 범죄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동, 방조, 교사하였다. 전쟁범죄는 민간인 특히 아동과 여성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데, 일본의 지배 아래에 놓인 사람들을 박해한 반인류적 범죄이다. 연합군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극동 재판에서 피해 아시아인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처

벌하지 않음으로써 국제법을 무시했다. 따라서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범죄로, 히로히토,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타가끼 세이즈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카무라 야스지, 마츠야마 유조를 기소했다.

△ **일본국가의 책임: 정남영 (북한 검사)**

: "조선인 위안부 숫자가 약 20만을 웃돌고 있다며 전체 일본군'위안부'의 80% 정도 되는 공인된 숫자이다. 국가 책임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헌장 4조에 의해 성노예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는 국가를 구성한 기관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했더라도 그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취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은 1925년 부녀 및 아동매매금지조약에 가입했다. 또한 1930년, 18살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에게만 강제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ILO국제조약에 위배된다." 다음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첫째 날 법정을 마쳤다.

- 철저한 진상조사 규명과 전모 공개
- 책임인정과 공식사죄
- 충분한 국가 배상
- 피해자들의 존엄을 또다시 훼손하는 행위 근절
- 희생된 피해자의 유골을 조사하여 고향에 안장할 것
- 해외 잔류 피해자의 귀국이나 조국 방문을 도울 것
- 특별법을 만들어 죽은 가해자도 형사 처벌하는 교훈을 남길 것
-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이런 범죄가 재현되지 않도록 할 것

2000년법정 둘째 날(2000년 12월 9일)

● 전문가 증인: 천황제도 (야마다 아끼라 / 메이지대 교수)

- 전 일본국왕의 권한에 대하여

: 전 일본국왕에 대해 11년간 연구했다. 전 일본국왕은 국가 원수이며 입법에 대한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다. 전쟁선포 또한 전 일본국왕의 절대 권력이다. 1889년에 제정된 명치헌법 상 전 일본국왕은 육해공군을 지휘, 통수하는 기능을 가졌으며 1882년에 전 일본국왕이 반포한 군인칙유에 의해 군인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전 일본국왕이 가지고 있다. 전 일본국왕의 권한은 초헌법적이다.(일본측 증거자료 19) 1936년 쿠데타 시도가 있었으나 쿠데타를 진압한 후, 전 일본국왕의 권력이 더 강화되었다.

- 전쟁과 성노예에 대한 전 일본국왕의 책임

: 전쟁 중 일본군이 중국에서 저지른 잔학행위를 전 일본국왕이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외무대신인 히로타 고키, 이시 이타로와 측근 도쿠가와 요시히도가 알고 있었으며, 시종이었던 도쿠가와 요시히도가 알고 있었으므로 전 일본국왕이 모를 리가 없다. 일본군 고관들의 잔학행위 의식 속에 강간부분이 포함되어 있다.(일본측 증거자료 22~25)

일본정부는 중일전쟁 후 군기를 바로 잡으려고, 1941년 전진훈(일명 군인칙유)을 공포하고 전 군에 배포했다. 육군대신 도조 히데키가 전 일본국왕에게 전진훈 원고를 보여주었으며 전 일본국왕이 허가했다. 전진훈의 규정에 여성에 대한 성적폭행 금지내용은 없다. 육군 헌법에 강간부분이 있긴 하나 러일전쟁 당시는 일본군이 1930년대 일본군과 달랐고 그렇게 잔악하지 않았다.

전 일본국왕의 동생 다카마 공의 일기에 동생 미카사 공이 육군의 잔학행위에 너무 놀라 전 일본국왕에게 말했다고 쓰여있다. 또한 성노예제에 대하여 전 일본국왕의 측근인 육군, 해군대신, 참모총장 등 군 부 최고 간부들이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전 일본국왕의 신임을 받아 임명된 사람들로써 비밀사항에 관한 말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일본군사 관련자료의 행방, 은폐와 보고체계

: 군 관계 중요 문건은 파기하라는 명령에 의해 대부분 소각되었다. 당시 시게하라 내각은 연합군이 전 일본국왕을 전쟁 범죄인으로 재판을 받게 할 것을 염려하여 '전 일본국왕에게 책임이 없으며 전 일본국왕은 전쟁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은 모른다'라는 각본을 만들어 움직였다. 1937년 중국의 남경대 강간에 대해 국제언론이 보도한 바 있으나, 일본 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전 일본국왕에게는 측근(내무

대신, 혹은 해외소식 특별 리포터)을 통해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전쟁 중 대본영으로부터 육해군의 보고가 전 일본국왕에게 매일 문서로 보고되었다. 그 내용은 매우 자세했고, 전쟁 경과는 매우 과장되었다. 다른 것은 상세하게 보고되었다. 가즈코 가와구치 검사는 "위안소 설치와 점령지구 설치 사이의 명령체계에 대한 자료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다만 전 일본국왕이 이 모든 잔학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으며 야마다 아키라의 전문가 증언을 마쳤다.

● 중국 기소

△ 기소장 낭독: 주홍준 (중국 검사)

: 1930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20여 만에 달하는 중국여성이 체계적인 조직에 의해 성노예로 살았다. 일본정부에 성노예 대상자를 위한 위령탑, 자료관과 생존자들에게 2000만 엔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했다.

○ 완 와이와의 증언

14세이던 1944년 일본군에 연행되어 일본군'위안부'가 되었다. 이상한 동굴로 끌려 들어갔고 강간했으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거나 말을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당했다. 탈출했다가 다시 끌려가기를 세 번이나 반복했다. 세 번째로 끌려갔을 때 나무에 손을 묶어놓고 때렸으며 한겨울에 발가벗겨져 묶어놓은 채 강간했다. (완 와이와는 증언 후 벌떡 일어나 스웨터를 벗다가 쓰러져 법정에서 들것에 실려 나갔으며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증언이 예정되어 있던 양퉁 피해자도 건강상의 이유로 2000년법정에 참석했으나 증언은 취소되었고, 15세에 일본군에 납치되어 성노예 역할을 했다는 구지쿠 피해자가 소개되었다. 못 다한 증언은 문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 유안 주린의 증언

1922년 7월 12일 생. 1940년에 납치되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거듭받고 따라간 곳이 일본군 부대였다. 군부대 안에 위안소가 있었고 먹을 것도 부족했다. 일본 이름을 받아 문 앞에 걸어놓았다. 탈출을 시도했다가 잡혀와 온몸을 구타당했다. 피임제를 받았고 주사를 맞았는데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 고급장교가 6개월 동안 독점하기도 했다. '위안부' 생활을 15개월동안 했다. 그 생활로 식물인간이 된 여성도 보았다. 돈을 대가로 받은 적이 없다.

○ 남경사건 강간 피해 증언

일본군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약탈하고 아버지를 죽였으며 어머니를 강간했다.

어린 아이였던 증언자 자신도 강간당했으며, 주위의 많은 여자들이 집단 강간당했고 죽었다.

중국 측 검사는 미국인 선교사가 당시 상황을 촬영했던 필름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관진창 검사는 전문가 증언 형식으로 발언했다. "일본군이 자행한 악랄한 범죄는 국제법과 여러 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국제법 46, 47조 위반사항으로 인권존중과 납치 금지가 언급된 이 조약에 일본정부가 1891년 가입했었다. 일본정부는 이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면책을 가질 수 없다. 본 법정에서 국제법 및 조약법을 근거해 일본정부를 처벌하고 피해자가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

□ 2000년법정 셋째 날(2000년 12월 10일)

● 네덜란드 기소

△ 기소장 낭독: 구엔트네이먼 (네덜란드 검사)

: "1956년 일본과 네덜란드간의 평화조약 베타비아 케이스에 「네덜란드 국가와 개인차원에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형사처벌 조항일 뿐이고,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개인에 대한 보상 및 배상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얀 러바헌(Jan Ruff-o'Herne) 증언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태어났다. 일본군이 자바를 점령한 직후부터 군인과 네덜란드 여성 및 아동, 민간인이 일본 전쟁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미슈지 육군 막소로 끌려간 수천 명의 여성과 아동이 짐승처럼 수백 명밖에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았다. 일본 군인이 사방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으므로 탈출은 불가능했다. 여성과 아동이 병과 기아로 죽어갔다. 19세에 들어가서 3년간 있었다. 17~19세의 여성수용자들이 카나리 랜드라는 곳으로 이송되었다. 일본어로 된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으나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다.

일본식 꽃 이름을 지어주었고 한 사람에게 방이 하나씩 주어졌다. 일본 장교들이 방마다 각각 들어갔고 각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름대로 저항하려 했으나 칼로 위협하며 강간했다. 3개월 동안 매일매일 강간당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바에서 보고라는 곳으로 이송되었고, 크리마 캠프라는 수용소로 옮겨졌다. 성노예했던 사람들을 따로 불러 수용하였다. 누구에게든 폭로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 후 네덜란드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남편 탐을 만나 결혼했으나, 네 번의 유산으로 임신이 어려워 아이를 입양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 부부의 성생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정대협으로부터 일본의 국민기금에 대해서 들었으나 오히려 국민기금은 굴욕적이고 치욕적이다. 아시아여성기금을 거절한다.

● 인도네시아 기소

△ 기소장 낭독: 누르산바니 (인도네시아 검사)

: 누르 산바니 검사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였고, 국제 공동기소장 외에 추가된 내용을 듣겠다며 시작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 "남반부 16군을 총괄하는 군대를 1932년 3월 2일부터 지휘하게 된 다라우치 대장, 하라다카 마쿠지(제4군 총사령관), 다카하시(함대사령관), 도하라 겐지 대장을 기소했다.

1941년 자바에 진군한 일본군은 총 27개의 위안소를 설치했다. 모두 인도네시아

여성으로 해군이 징집해서 운영했고, 하나는 육군소속이었으므로, 일본 국가가 총괄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 이브 수하나 증언

1942년 8월, 부모의 집 앞에서 일본군에게 머리채를 잡혀 납치되었다. 팀방 거리에 있는 위안소로 갔다. 네덜란드 가옥에 감금되었다.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다. 동물처럼 취급당했다. 아직 그 집이 남아있으며 그 구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제일 싫은 것이 다리를 벌려 꽉 잡은 것이었다. 방어하려고 노력하면 군인들이 매우 화를 냈으며, 강제로 끌어당겨 얼굴이 퉁퉁 부울 때까지 뺨을 때렸다. 자궁이 없어져 결혼도 할 수 없었고, 아이도 가질 수 없었다. 일본 패망 후 집으로 돌아갔지만 부모는 무참히 살해당했고 이모가 돌봐주었다

○ 마르디엠 증언

12세에 보르네오 극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속아서 위안부로 갔다. 모모에라는 일본이름으로 불렸고, 3년 동안 일본군들은 매일 10~15명이 왔다. 툭하면 군인들은 폭력을 휘둘렀다. 일본군'위안부'를 학생이라고 불렀으며, 위안소는 군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14살에 임신했고 처음으로 인공유산을 했다. 마을 원로들이 징집에 가담했다. 1993년 자카르타 법률 고문관 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첫째, 일본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

둘째, 일본의 젊은 세대가 이런 역사적 잘못을 충분히 인식해야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일본정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되는 금전 배상이 있어야 한다. 3년 동안 쉴새없이 하루 13시간 이상 성노예로 일했다. 내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

안타리니 검사는 "인도네시아의 일본군대 희생자연합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2만 2천명 중에 249명의 생존자가 신원이 확인되어 있다."고 밝혔다.(인도네시아 기록 첨가)

□ 2000년법정 셋째 날(2000년 12월 10일 오후)

● 전문가 증언: 트라우마 (레파 므라제노비스: 성폭력예방센터)

여성 성폭력 대상으로 임상심리연구를 10년간 했다. 증인이 근무하는 곳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병원으로 전쟁으로 인해 발생된 강간, 기타 폭력으로 손상된 여성들을 치료하고 있다. 일반적 강간과 전쟁중 성폭력의 차이가 현저하다. 여성이 직면한 상황이 달라진다. 가해자가 군인이라는 것. 강간이 단독이 아니라 윤간이라는 것과 반복되는 강간이라는 것. 여성의 육체에 손상이 많다. 칼, 총, 불로 지지고, 벨트로 내려치거나 군인들이 「너희는 적군에 속하는 여성이니 우리가 파괴해야 한다.」는 폭언이 동반된다는 것. 가족이 살해되거나 폭력으로 집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한다는 것.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공포와 굶주림이 수반되고 강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위협적 상황은 여성들의 생리와 심리를 바꾸어 놓는다. 트라우마가 계속되면 쇼크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신불안, 유기적 화학 반응이 달라지며, 단순한 충격이 아닌 여성의 모든 부분에 대한 피해가 가중된다. 윤간 당하는 경우의 여성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 중 여성이 당한 폭력을 전후 상황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첫째, 쇼크로 인한 감정위축, 말을 않고 고립되려고 하며, 부인하는 등의 과정을 겪는다.

둘째, 분노한다. 갑자기 웃거나 분노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정의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 과거가 눈앞을 스치면서 모멸감이나 죄책감을 느낀다.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고립되려고 하며,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자신감을 상실하여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책임감이 저하되어 가족부양이나 업무 수행 인지도가 떨어진다. 세상이 싫어져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

셋째, 사회 형태의 변화이다. 관계형성이 어려워져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달라진다.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다거나 못하게 되는데 계속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성폭력 이후 아이를 낳은 여인은 아이를 보면, 그 순간이 계속 떠올라 지속적으로 딜레마에 빠진다. 그래서 회복되었다고 믿은 다음에도 자살을 기도한다.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이나 사회가 이해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여성이 머무는 곳에서 사회보장이나 심리적 도움이 필요하다. 전쟁 시 강간당한다는 것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강간했기에 그들이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처벌하게 되면 굴욕이나 수치감이 감소하게 된다. 자아의 회복이 중요한데 국가가 책임을 지게되면 여성들의 자아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충격이 한 여성에게 국한된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이

폭력은 정치적인 문제이고, 여성에게 가해진 체계적인 범죄이기에 이 현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전문가 증언: 일본군 '위안부'제도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학 교수)**

○ 1965년 9월 야마사키 내무대신 좌담회 기록문에서 발췌

오쿠노 세이스케라는 정치가는, 1945년 8월 15일 공문서를 소각함을 결정하는 것을 문서로 남겼다. 그는 1950년 9월 28일 좌담회에서도 전후 공문서 인멸에 대해 「공문서를 소각하고 군의 물자는 민간에게 전달하라. 시간이 없으면 시나 마을로 보내라. 부녀자들을 도망가게 할 것인지는 지방의 관습에 따라 하라.」 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요시다의 증언에 「노동성, 대장성 등 각 부서마다 미국에서 받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증거자료 39)

● **전문가 증언: 일본군대 체계 (하야시 히로후미/ 칸투 카쿠인 대학 교수)**

○ 나카소네 야구시로 회고록 발췌

23세 때 해군대위로 1941년 말 인도네시아에 정착하여 대부대를 지휘했다. 원주민을 강간하거나 도박하는 일본군 때문에 위안소를 만들었다.(인도네시아 증거 13)

○ 1998년 10월 9일 전시피해자와 송신도 패소판정 신문기사

2000년 11월 30일 도쿄 고등법원이 송신도 피해자 기소를 '기각' 판결했다. 일본 국가권력이 만든 재판소에서 시모노세키 판결 외에는 원고가 패소하고 있다. 시모노세키 판결도 입법 부작위를 이용한 것이지 원고의 승소는 아니다. 일본내 피해자가 낸 재판의 현실이다.

일본의 초·중 교과서에 종군위안부의 언급이 거의 없거나 회피하려고 한다. 문부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책임유기이다.

○ 1940년 9월 19일 육군성 부관 가와하라 나오이지의 육군의 공문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약탈, 방화 등 황군의 본질에서 이탈하는 행위가 보이고 있다며, 「군간부가 교육하라. 위안부에 대해 교육을 하라.」 고 쓰여있다.(일본측 자료 43)

● **전문가 증언: 국가책임 (칼 소벤/ 라이덴 대학 교수)**

국제 인도진상규명협의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 국가 책임이란 국제적으로 감

행된 불법행위를 국가에 전가 가능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조약이나 협약법 등 국가가 개인이 잘못을 했을 때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고위관리, 관리, 군인 등 모두 포함된다. 한 국가의 공식관리 기관이 정부의 통로로 이용되어 범행을 했다면 책임져야 한다.

1907년 헤이그 협약 및 규정은 전쟁시에 관련된 1890년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협약이다. 일본 정부는 많은 협약에 비준하고 있으며, 평화 협약 안 배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정부는 위안부와 관련하여 어떤 협상도 한 적이 없다. 일본군 성범죄는 전쟁범죄이며 인도에 반하는 죄이므로 공소시효가 없다. 또한 국제적으로 불법행위를 국가가 범했을 경우 자국법보다 국제법이 우선이다.

● 동티모르 기소

△ 기소장 낭독: 카멜리타 모니즈 (동티모르 검사)

: 제한된 시간 때문에 많은 증거자료들을 프리젠테이션으로 하였다. 동티모르는 1942년 6월 20일 일본군 83사단에 의해 침략되었다. 민가를 빼앗아 위안소를 만들고 여성들이 강제 연행되어 위안부가 되었다. 여성과 일반시민들이 강제 노역을 했다. 불리아나, 말리아나, 메모, 마르보 위안소의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피해자들은 생리가 생기기 전에 연행되어 확실히 몇 살이었는지도 모른다. 동티모르 인에 대해 저지른 여성폭력을 고발하는 첫 번째 법정이 될 것이다. 현재 15명의 피해자가 밝혀졌다.

○ 마르타 증언 (비디오 증언)

1944년 일본군이 들어왔고, 집을 빼앗아 위안소를 만들었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관리했으며 방이 3개였다. 투갈로 마을이었다. 가족을 노예처럼 다루었으며 그 상황에서 오빠와 동생이 죽었다. 강간한 사람은 스라무라, 하와노라는 사람들이었다.

일본군을 위해서 일했던 동포들에게 연행되었다. 콘돔을 끼고 강간했다. 10명이 윤간했는데 너무 어려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었다. 걸을 수도 없었고, 낮에는 빨래를 하고 나무도 하면서 노예처럼 일했다. 여러 여성들이 한 방에 있었다. 눈을 가려서 서로 볼 수 없게 했다.

○ 에스메랄다 증언

일본군이 와서 모든 것을 약탈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랐다. 성 경험이 없는 어린 아이였는데 끌고 가서 강간했다. 부모들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들은 부모를 죽였다. 낮에는 여자와 남자들 모두 농장에서 일했으나 밤에는 남자들은 집으로 보냈고 여자들은 네 개의 지정된 집에 보냈다. 집이 부족하면 숲

에서 강간한 뒤 죽였다.

● **전문가 증언: 일본인 위안부 (후지메 유키/ 오사카 외국어 대학교수)**

공창제도를 연구했다. 1945년 4월 1일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했을 당시의 오키나와 위안소 지도를 보면 일본군 부대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위안소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위안부를 나가시 유곽에서 강제 동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스지 유곽의 책임자에게 위안부를 모으라고 강요했다. 오키나와에 135군에 위안소가 있었다. 또, 스지 유곽에서 군대 위안부로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려고 폐업하려 했는데 폐업하지 못하도록 군대가 위협했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인 위안부는 주로 빈곤층, 저소득층의 여성들이었다. 일본인 위안부들이 이미 매춘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유곽의 폐업이 자유인데 폐업할 수 없게 국가가 관리했다면 다른 일본 점령지의 여성들과 같이 성폭력 대상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종군위안부 문제가 이슈가 된 현 상황에서도, 일본인 위안부 문제는 매춘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 **가해자의 증언: 전 일본 군인**

○ 가네코 야스지 증언

1940년 11월 동지나 관동군 소속 군인이었다. 소화 17년에 산둥성에 주둔할 당시 일본군'위안부'를 모으라는 명령을 받고 9명을 모집했는데 그 중 3명이 조선인이었다. 소화 18년 처음 임청현에 있는 위안소에 갔다. 비아라는 곳이었는데 일본군'위안부'는 모두 조선인이었다. 일본인 여성도 있었는데 돈에 묶여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군인들이 윤간을 해도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처와 딸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런 행위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지 절실히 알게 되었다.

○ 요시오 스즈키 증언

1942년 북지나 관명군 소속으로 중국 산동성에 종전까지 있었다. 한 군에 5~6명의 일본군'위안부'가 있었다. 일본 군의관이 성병검사를 하고 관리했다.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1944년 위안소에 갔다. 전쟁 상황이 불리해지자 어차피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자랑 놀아보자고 생각했다. 특정 여성을 찾아갔었다. 마사오라는 조선 여성이었다. 그녀는 종군 간호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왔었는데 도망가고 싶다고 했다. 그때 그녀들이 강제로 끌려왔었다는 생각을 했다. 강간도 했었다. 지휘관이 군인을 모두 풀어 여성들을 발견하는 대로 강간하라고 했었다. 육군 헌법에는 강간을 하면 4년 이상 형벌을 받는다. 그러나 당시 지나인이라고 차별하였고 「중국여성을 범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어차피 죽일 것이니까.」라는 생각이었다. 또 지휘관은 자기 업적에 문제가 되므로 절대 보고하지 않았다.

● **변호인 발언: 아이타이 구니오 (일본 변호사)**

: 2차대전과 전후 폭력을 다루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송신도 피해자 재판을 맡았었는데, 2000년 11월 30일 도쿄 고등법원은 1930년 아동매매, 여성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국제법 위반이 인정된 유래 없는 재판이었다.

두 조약에 대한 위반은 국가 책임을 발하는 것이기에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다고 판결했다. 동경법정이 국제법정에서 실시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제법상 손해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같은 해 12월에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라고 했다. 1999년 전시 성폭력 강제 행위자에 대한 요강을 발표했다. 내용으로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전후 잘못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형사처벌 등이다.

● **최종기소**

△ **우스티나 돌고폴 (국제검사)**

: 며칠동안 성노예전범 재판을 열었다. 이 재판정에서 용기를 보여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감동은 컸다. 1933년 일본 정부가 문서로 성노예제에 대한 언급을 했다. 가해자의 증언에서도 강간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며 군 당국에 의해서 장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헤이그 조약에 위반 사항이다.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국가책임이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대로 군 차원의 성 계획이 기본협정 때문에 소멸될 수 없다. 개개인 피해자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사죄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사 여러분의 정당한 판결이 필요하다.

△ **패트리샤 셀러즈 (국제검사)**

: 아직도 가슴이 뛰고 있다. 사기와 납치를 통해 생리도 안 한 어린애를 강제 연행했었다. 앞의 성노예 피해자 증언을 통해 볼 때 아무도 누구를 소유할 수 없다. 강간당하고 폭행당한 여성들이 최종적으로 자신을 소유한다는 마음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 속에서 생존한 여성들도 있지만 그들의 삶은 고단했다.

일본 정부가 개입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전쟁이 끝난 뒤 문서를 은닉하려 했으나 일부 문서가 남아 있다. 당시 육군 대신 이타가키도 명령함으로써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도록 했었다. 데라우치 총독도 위안소를 설치하도록 명령했고 실적이 좋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기도 했다. 군의 절대적 실력자는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이었다. 일본군은 종전되어 점령지를 떠나면서 일본군'위안부'는 파괴하면서 위

안소는 파괴하지 않았다.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위안소에 대한 정보는 너무 많다. 1937~1945년 종전까지 군대와 함께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전 일본국왕이 이를 몰랐다고 할 수 없으며,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